

제151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24. 6. 4.(서면)

- 안건명 : 지축승무중합동 신축공사 보완설계용역 용역발주심의
위 안건에 대한 제151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채택'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4.1 건축계획 부분에 아래내용 추가
 - (1) p26 4.1.2 가. 배치계획에 공공성을 제공하는 공간 구성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공공건축물로서의 역할과 기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 (2) 건축계획에 Barrier Free(무장애) 만이 아닌 Universal Design (모두를 위한)개념을 반영하도록 계획에 접근하여야하고, CPTED Design 개념의 자연감시가 가능한 안전디자인 계획을 반영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권합니다.

- 구조설계 기본사항에 콘크리트 내구성 설계 기준 추가
 - (1) 2021년 2월 KDS 14 20 40, KCS 14 20 10) 개정으로 콘크리트 내구성 설계 기준에 만족하도록 재료확인이 필요합니다.

- 4.4.1. 기본방향 - 'LID기법을 적용하여 생태적 물순환 도모' 내용추가

- "설계의 안정검토" 규정사항 과업내용 추가
 - 카. 설계의 안전성 검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4.7.2 3. 특기사항에 아래 규정 추가
 - (1) 규정추가
 - ① 내용 : KESC(Korea Electrical Safety Code :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 점검기준)
 - ② 사유 : 준공검사시 설계자, 시공자, 발주자와 검사원 간에 분쟁소지를 방지하고자 함.

첨부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끝.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지축승무종합동 신축공사 보완설계용역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건 축	<p>1. 녹색제품 구매촉진 관련 다음 내용을 반영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사설계서에는 녹색제품 사용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때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http://gmc.greenproduct.go.kr) 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에 적합한 건설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 종합공사 40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 이상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직접구매품목을 녹색제품으로 직접구매할 수 있도록 공사내역서의 관급(지급)자재를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결과 녹색제품 설계 반영실적과 증빙자료를 정산·보고하여야 한다.(용역업체 → 발주처 → 기후환경정책과) <p>2. 적용 규정 및 지방시 관련사항에 대해 아래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 반영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방서 작성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서울시 설계지침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KDS)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p>3. 야생조류 충돌방지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건축 설계토록 명시하고 검토내용을 최종 성과물에 포함·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p> <p>4. 공공시설 디자인 품질관리 개선 방안을 과업내용서에 반영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및 실시설계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2021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을 반영하여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https://ebook.seoul.go.kr/Viewer/H3H73RCSXZQJ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http://www.sudc.or.kr/cop/bbs/selectBoardList.do?bbssetupSn=11#ids475 - 디자인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우리 부서에서 운영 중인 	

공공디자인 전문가 풀 활용 가능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제13조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절차(필요시 유니버설디자인 사전컨설팅 포함) 이행하도록 과업내용서 등에 포함

5. 작업일지의 작성 및 투입일수 기록 제출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할 것

-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서식4)에 따른다.

-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6. 설계도서 작성기준 관련 아래와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의 작성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건축편)」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의거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그리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신기술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 검토할 것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

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설계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공사비가 100억원 이상)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을 받아야 한다.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관련 내용을 과업내용에 추가할 것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개진 등 설계VE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결과 승인된 VE 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지침(2024.1.)을 참고하여야 한다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주택→자료실→건설기술→지침/방침 참조)

9. 장애인 등 편의시설 계획'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할 것

- '장애인·노약자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등 편의증진을 위한 건설기술심의 적용 실무매뉴얼' (기술심사담당관-17770, '16.10.19.)을 준수한다.

10. 최종 성과품 관련 아래 내용 검토하여 반영할 것

-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최종 설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건축편) 성과품작성기준에 의한다.

11.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시행에 관한 내용을 과업내용서에 포함할 것

-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 시 가설구조물 관련 구조검토서를 첨부하고 가설구조물 부문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설계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를 명확하게 작성 한다.

-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어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하는 내용을 시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시스템비계 설계 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코드, 가시설물 설계 기준코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12. 설계의 안전성 검토와 관련하여 과업내용서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실시설계시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거, 감소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 설계자는 설계 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 ▶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 ▶ 실시설계시 시공전문가(건설기계, 가설구조물 등 위험공종 부문)를 참여시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검토
- 설계자는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남아있는 위험요소의 유형,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안전관리문서로 정리하여야 한다.
-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대표 설계자는 동일한 위험요소 도출 및 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협의하기 위해 공종별 설계자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이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신기술개발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위해 시공 및 안전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시공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시공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건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관련 건설안전 전문가를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설계자는 도출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인 경우에는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13. 사업비 산출 시에는 최근 유사 공종 준공 사례 조사·분석 결과, 실적 공사비를 비교·검토하여 산출하고,

14. 인건비, 자재값 상승 등을 고려한 적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시기별 사업비를 제시하고 전문가(전문기관) 자문(검증) 등을 통해 적정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할 것

15. 과업내용 변경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것

- 과업내용 변경

1)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 지반상태 등 변경이 불가피할 때

16. (p.2) 1.3.2. 과업수행계획서 관련 아래내용 추가 및 수정 반영할 것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건축편)에 의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요인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① 각 관련주체(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색채 등)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한계
- ② 과업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명단 (별첨1)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전문분야별 기술자중에 견적 및 내역작성업체, 공법,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건설업체 등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련주체의 작업반 구성이 되도록 작성한다.
- ③ 전기분야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제1종 이상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④ 정보, 통신분야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유자격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⑤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⑥ 설비분야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a. 상기 ③,④,⑤,⑥에 등록된 유자격자가 없을 경우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하여 유자격 등록자 또는 개설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⑦ 목표예산(공사비:00,000백만원)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 a.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과도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 b. 본 과업내용 중 설계 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소요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한다.
 - c.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항에서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추정 공사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다.
 - d. 부실설계 및 향후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⑧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7. (p.4) 대지위치 표기 시 모든 지번을 함께 표기할 것

18. (p.4) 1.2 과업의 목적 및 개요에 설계용역비 및 예정공사비 관련 아래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람

- 설계용역비 명기할 것
- 예정공사비 명기할 것(전기분야는 분리 발주하므로 공사비에서 제외)
- 폐기물 처리 포함 여부 확인 후 과업에 해당되는 부분 명시

19. (p.1) 과업기간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할 것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3조제3항

20.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관련 아래항목을 수정 및 추가하시기 바람

-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1. (p.11) ‘1.3.17. 기타사항 가. 용역시행자의 교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람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2. 설계진행시 제출서류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할 것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3. 기타사항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시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20.1.16.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공사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제출할 것
-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용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2023.1.13.)에 따라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를 공사용가에 반영할 것

24. 공사이방서는 서울시 전문시방서(2018년 개정)를 참고하여 필요한 코드 재편집(서울시 전문시방서의 공종분류체계와 같은 체계로 작성)하여 작성하되 시설물별 공사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맞게 전문시방서의 공종

	<p>및 내용을 수정, 삭제, 보완하여 작성하고, 시공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 활용서를 추가 작성할 것</p> <p>※ 현장활용서 작성시 서울시 전문시방서 부록(현장활용서) 참고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서비스> 건설> 건설기술> 자료실)</p>	
<p>기 계</p>	<p>25. 과업내용서(다. 공기조화설비) p61에 다음 사항을 추가 검토 반영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조설비 계획은 전기 또는 급배수 설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설계 계획시에는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p>26. 과업내용서(다. 공기조화설비) p61에 다음 사항을 수정 검토 반영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전) 배기량이 많은 공조계통을 충분히 검토하여 열회수장치 설치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는 운영상 편리하고, 효율이 좋은 기종으로 설치 - 변경 후) 배기량이 많은 공조계통을 충분히 검토하여 열회수장치 설치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는 전열교환기와 현열교환기 중 운영상 편리하고, 효율이 좋은 기종으로 설치 <p>27. 과업내용서(차. 신재생에너지설비) p64에 다음 사항을 추가 검토 반영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 지열을 냉난방열원으로 사용 시 주변 여건 및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직형, 수평형, 그리고, 밀폐형, 개방형 지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안을 적용하여야 함 <p>28. 과업내용서(4.5 기계설비계획 / 4.5.1 일반사항) p55에 다음 사항을 추가 검토 반영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 실시설계단계에서 기계설비류 부하량 계산 시 SI단위로 결과값을 제시할 것 	
<p>전 기 · 통 신 · 소 방</p>	<p>29. 적용 규정을 개정된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그에 따라서 과업 내용서를 작성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14) '2.2 적용기준 - 리'에서 내선규정 폐지 - (p71) '4.7.2. 특기사항 - 가'에서 내선규정 폐지 - (p76) '다. 전력간선설비 - 바)'에서 내선규정 폐지 - (p77) '라. 동력설비 - 사)'에서 내선규정 폐지 - (p73) '4.7.2 특기사항 - 더'에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 폐지 <p>30. (p72) '4.7.2. 특기사항 - 야'에서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p>	

	- 전력 인입 배치도, 전기설비 계통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평면도 등	
토 목	<p>31. (p.51) 「4.3.11. 구조계획」 ‘거’와 ‘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가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 공법, 특정 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 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신기술 반영의 경우 필요시 건설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검토 및 선정 보고서 발주기관에 제출) <p>32. 매끄럽지 못한 문구 등은 수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42) 4.3.4. 지반조사 자) 계약상대자는 ~ 사진첨에 첨부시켜야 하여야 합니다. - (p.45) 4.3.5. 토공사 및 흙막이 설계의 나. 설계자는 ~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용을 이용하여 ~ - (p.51) 4.3.9. 도로(보도 포함) 및 포장설계 차. 보도포장 관련 ~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여야 합니다. 	
조경	<p>33. 분야별 과업지침 4.4. 조경계획에 아래사항을 추가하시기 바람.(p.53)</p> <p>가. 경관성 향상을 위해 녹지 및 식재 수량 확대, 생태면적률을 고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공지반에 수목 등 식재설계시 토심은 식재종별 생육최소심도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시 외부에 급수 연결시설 설치 또는 자동관개시설의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p>나. 인공지반 식재 시 구조물 보호를 위해 배수 및 구조물 방수, 방근처리를 하여야 한다.</p> <p>다. 범죄예방을 위한 CPTED기법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한다.</p> <p>34. 문구 수정.(p.53)</p> <p>나. 경계획의 범위는 ~ → 나. 조경계획의 범위는 ~</p>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지축승무종합동 신축공사 보완설계용역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건 축	<p>1. 총칙 과 2. 3. 과업지침의 내용 구성에 타당성을 지닙니다.</p> <p>(1) p18_2.3.13 ‘미관 ’의 명칭의 경우, 단순한 조형성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도시의 통합적 이미지 구축과 건축물의 Identity를 형성하는 ‘경관’으로 표기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경관에는 마) 조경계획도 포함될 것입니다.</p> <p>4.1 건축계획</p> <p>(1) p26 4.1.2 가. 배치계획에 공공성을 제공하는 공간 구성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공공건축물로써의 역할과 기여가 가능할 것입니다.</p> <p>(2) 건축계획에 Barrier Free(무장애) 만이 아닌 Universal Design (모두를 위한)개념을 반영하도록 계획에 접근하여야하고, CPTED Design 개념의 자연감시가 가능한 안전디자인 계획을 반영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권합니다.</p> <p>(3) 옥상에 태양열판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구조물이 시각적으로 인지가 되지 않도록 차단 계획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p> <p>-전체적으로 오타가 많습니다. p27 자) ...하여야 = 하여야 로, p53 4.4.1 나. 경계획= 조경계획으로 . 검토가 요구됩니다.</p>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24년 5월 29 일

2024. 5 29.(수) 까지 본 검토서를 e-mail(leewg214@seoul.go.kr)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지축승무종합동 신축공사 보안설계용역 용역발주심의

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전기	1. 4.7.2 3. 특기사항 (1) 규정추가 ① 내용 : KESC(Korea Electrical Safety Code :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기준) ② 사유 : 준공검사시 설계자, 시공자, 발주자와 검사원 간에 분쟁 소지를 방지하고자 함.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24년 5월 24일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지축승무종합동 신축공사 보완설계용역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조경	<p>1. 과업내용서</p> <p>(1) p.18 2.3.13. ‘미관’ → ‘경관계획’으로 용어교체</p> <p>(2) p.16 2.3.성능기준 - ‘BF 설계’, ‘LID기법 적용’ 내용 추가</p> <p>(3) p.53 4.4.1.기본방향 - ‘LID기법을 적용하여 생태적 물순환 도모’ 내용추가</p> <p>(4) p.53 라.조경시설물 설계 -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안정성 확보 검토’ 내용추가</p> <p>(5) p.54 마.식재설계에 내용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피 및 초화류의 식재 시는 생태적, 경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식재 밀도를 계획하고 활착 시까지의 초기 경관에 대비한 멀칭재를 반영하여야 한다. - 식재수종은 ‘서울형 매력식물 400 식물도감’을 참고하고 경관적 가치가 높으며 지역의 생태적 특성에 맞고 구입이 용이한 경제적 향토수종을 우선 선정하여 설계한다. 	
종합의견	<p>(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p> <p>※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p>	

2024년 5월 27일

2024. 5 29.(수) 까지 본 검토서를 e-mail(leewg214@seoul.go.kr)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지축승무종합동 신축공사 보완설계용역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p>1. 구조설계 기본사항에 콘크리트 내구성 설계 기준 추가 (1) 2021년 2월 KDS 14 20 40, KCS 14 20 10) 개정으로 콘크리트 내구성 설계 기준에 만족하도록 재료확인이 필요합니다.</p> <p>2. 37페이지 D)기초설계 라 항목의 오기 수정 (1) 기초형식은 건축구조기술사와 토질 기초기술사의 결정에 다릅니 다.에서 “다릅니다”를 “따릅니다”로 오기 수정</p>	
종합의견	<p>조건부의결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p>	

2024년 5월 29일

※ 서면심의이므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글파일 별도 송부)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지축승무종합동 신축공사 보완설계용역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기계 설비	<p>1. 관련법령명 보완</p> <p>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국가화재 안전기준(P14)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화재안전성능 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p> <p>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P15)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p> <p>3)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p> <p>4) 소방법 관련사항 → 소방관련법 사항(P67)</p> <p>5) 소방법 관계법규 따라 설치를 검토 (P67) → 소방계법규에 따라 설치를 검토</p> <p>6) 화재안전기준 → 화재안전성능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P67)</p> <p>7) 관련법(소방법 등) → 관련법(소방기본법 등) (P67)</p> <p>8) 소방법에 준하여 → 소방관계법에 준하여(P69)</p> <p>9) 소방법과 동법 시행령,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소방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P69)</p> <p>2. 적용기준 추가</p> <p>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P15)</p> <p>츠.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검사 기준(P15)</p> <p>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P15)</p> <p>트. 실내공기질관리법(P15)</p> <p>프. 설비공학 편람[(대한설비공학회),P15]</p> <p>흐. 공기조화설비의 시험, 조정, 평가(TAB) 기술기준[(대한설비공학회),P15]</p> <p>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P15)</p>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p>3. 용어 통일 대체에너지이용 → 신·재생에너지 이용(P55) 대체에너지를 → 신·재생에너지를(P57)</p> <p>4. 고시된 기준용어로 변경 및 내용추가(P65) ㉞ 가스미터는 전기 개폐기, 전기미터에서 60cm 이상 떨어질 것 → ㉞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는 0.6m 이상,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는 0.3m 이상 떨어질 것</p> <p>5. 내용추가 (P57) 라.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계획 마) 냉각탑 배관 등 동결의 우려가 있는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p> <p>6. 내용변경 1) 가.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며 →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하며(P16) 다. 경보, 유도, 피난, 방연, 배연 및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방관련법 참조) → 다. 경보, 유도, 피난, 방연, 배연 및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방관련법령 및 건축관련법령 참조)</p> <p>2) 2.3.16.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련법 준용(P19) 가) 본건물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련법에 의해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물에 해당되므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련법 및 → 2.3.16. 실내공기질 관련법 준용 가) 본건물은 실내공기질 관련법에 의해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물에 해당되므로 실내공기질 관련법 및</p> <p>3) 휘발성 유기화합물 비중이 낮은 →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방출(P19)</p> <p>4) 가스차단장치(P63) ㉞ 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되는 ~ 중략 ~ 가스누설 여부 및 차단상태를 파악할수 있어야 함 → 긴급차단장치(P63) ㉞ 긴급차단장치가 설치되는 ~ 중략 ~ 가스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하여 가스누설 여부 및 차단 상태를 파악할수 있어야 함</p>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p>5) 비상전화(P69) 화재안전기술기준의 개정(2022년 9월)으로 4층 이상건축물 자탐설비에 적용토록 되어 있는 전화선이 삭제되었음. → 화재시 설치목적에 맞는 기능을 못하는 등 무용론이 있어 개정된 사안으로 재 검토후 꼭 필요한 기능이 아니면 삭제요망</p> <p>6) 물분무 소화설비(P70) → 물분무등 소화설비</p> <p>7)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설비, 동력펌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비 등을 말합니다.(P70) →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피난설비, 동력펌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설비 등을 말합니다.</p> <p>8) 방재센터 : 상기열거된 모든 방재설비를 관할하도록 설치합니다.(P70) → 방재센터 : 상기열거된 모든 방재설비를 관할하도록 설치합니다. 다만 화재·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p> <p>9) ㉠ 비상콘센트를 설치하도록 → 화재안전기술기준(NFPA 504)에 준하여 비상콘센트를 설치하도록(P69) ※ 비상콘센트 설치 비대상 건축물이나 본 용역설계에는 적용</p> <p>10) 스프링클러설비 등(P70) 내진설계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는 내진설계</p> <p>7. 오타수정 가압송수장치(P34) → 가압송수장치 건축분야과 전기분야에(P67) → 건축분야와 전기분야에</p>	
종합의견		

2024년 5월 29일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지축승무종합동 신축공사 보완설계용역 용역발주심의

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p>1. 설계내용에 대한 시행계획 적정성 : 적정</p> <p>(1) 지축승무종합동 신축조성계획 서울교통공사 사장방침수립</p> <p>2. 과업내용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등</p> <p>(1)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해당용역 정보 입력 추가 → P.2</p> <p>-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p> <p>카.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28호 서식)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p> <p>(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과업내용 추가 → P. 12</p> <p>-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 2</p> <p>1.3.18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p> <p>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p> <p>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p> <p>나.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p> <p>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p> <p>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p> <p>마.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p> <p>바. 공공측량 계획</p> <p>사. 용역수행자의 교체 및 하도급 사항</p> <p>(3) “설계의 안정검토” 규정사항 과업내용 추가 → P.20</p> <p>- 관련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p> <p>카. 설계의 안전성 검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p>	

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4) 오자 수정 -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P.7 -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고 →P.10 - 본 용역을 시행 상 대내외적으로 취지득한 모든 사항 - P.107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24년 5월 일